

제주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16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13.

제1 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가소94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거주했던 입주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며 2015. 3. 10.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7. 7. 14. 개최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서, 1세대당 주차스티커 1매만 배부하고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 후 경고문 부착하고 주차 위반 횟수에 따라 주차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주차규정’이라 한다) 제정 안건이 상정되어 피고와 감사 2명, 이사 2명, 동별 대표자 등 6명 전원 동의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규정에 대해 2017. 7. 31.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 237세대 중 192세대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규정에 기한 주차위반금을 2018. 2.부터 2018. 12.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과받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위반금으로 합계 160,000원(이하 ‘이 사건 주차위반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제주시에서는 2021. 7. 6.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차 위반에 대한 위반금 징수 및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해져 있는 비목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며, 주차위반금은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이므로 관리비와 위반금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아파트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위반금을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에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원고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비 항목에 포함될 수 없는 이 사건 주차위반금을 관리비로서 징수하였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위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자 대표자로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주차규정 안건을 의결한 후 시행하도록 한 끝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위반금을 징수한 것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차위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위반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주차위반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금 징수의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하여 징수한 것으로 주차위반금을 관리비 항목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주차규정을 제정했고, 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차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관리주체 명의로 이 사건 주차위반금이 부과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주차위반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제주시 측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비추어 관리비와 위반금은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주차위반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해 관리주체에 조치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수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이 기재되어 징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4조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참고하여 이 사건 주차규정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주차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차규정에 기해 이 사건 주차위반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이 사건 주차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관여한 것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기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건, 판사 정가원, 판사 이선희